거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(안전총괄과)

( 제정) 2018.03.28 조례 제2453호

(일부개정) 2019.07.01 조례 제2526호

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

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(이하 "사회재난"이라 한다)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지원 결정)

- ① 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군 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.
- 1.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2.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(2019.7.1.)
- 3.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·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4조(지원기준)

-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"이라 한다)
- 2.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(이하 "간접지원"이라 한다)
- 3.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"피해수습지원"이라 한다)
- 4. 피해주민에게 일반적 범위에서 필요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(호신설 2019.7.1.)
- 5.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(호이동 2019.7.1.)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, 재정 여건,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5조(중복지원 제한)

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

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

- ① 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(이하 "생활안정지원등"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(2019.7.1.)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1.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
- 2.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-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·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·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·실종·부상·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

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- 1. 중앙행정기관
- 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2019.7.1.)
- 3.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
- 4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
- 5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
- 6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·축산업협동조합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 협동조합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
- 7.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공단
- 8.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

## 제8조(지급방법)

군수가 제6조제5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)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

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## 제9조(환수)

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

다.

제10조(재원의 확보)

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그 밖의 주요 사항)

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,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, 부담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.

제12조 삭제<2019.7.1.>

부 칙(제정 2018.3.28. 조례 제245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한다.

제5장(제20조·제21조), 별표 7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.

## 부 칙(조례 제2526호 2019.7.1.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다.